

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<http://www.daedeok.go.kr>

제2018-66호
2018. 8. 28.(화)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차 례

공 고(1)

-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(안) 공고(공고 제2018-668호)1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/ 편집 기획감사실우: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(오정동) ☎ 608-6607

대전광역시 대덕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(안) 공고

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사회보장급여법」(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)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8월 28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계획의 명칭 :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(안)

2. 수립하고자 하는 이유

「사회보장급여법」(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) 제36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 수요 측정, 계획의 목표, 추진전략, 중점추진사업과 함께 세부사업에 대한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.

3. 계획시행기간 : 2019년 ~ 2022년

4. 주요내용

가. 사회보장 수행을 위한 지역의 여건 진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문제 제시함.

나.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을 아우르는 목표와 추진전략, 중점추진사업(세부사업 중 핵심사업) 및 세부사업 등 제시함.

다.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들의 추진 방안제시,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, 연차별 목표수준 등 제시함.
라.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, 추진전략, 관련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, 행정 등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.

- (1) 재정계획
- (2) 행정 개선 계획
- (3)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
- (4) 입법(조례) 추진 계획
- (5) 민관 협력 개선 계획

마.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연중, 연차별로 계획을 기반으로 실행을 독려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계획운영 점검 및 평가의 내용을 제시함.

5. 의견제출

가.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(참조 : 복지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계획안에 대한 의견(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내용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34443 /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20(오정동)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복지정책과(전화 : 042-608-6762, FAX : 042-608-3832, E-Mail : marmy@korea.kr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윤희(☎042-608-676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